

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위원회 등 수당 및 여비 지급 규정

제정 2024.06.03.

개정 2025.07.2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(이하 “시장애인체육회”라 한다)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 등”이라 한다)에 참여하는 시장애인체육회 비상근 임원 및 외부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5. 7. 21.>

제2조(적용) ① 이 규정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, 규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

② 이 규정에서 위원회 등이라 함은 시장애인체육회가 사업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구성한 심사단, 평가단, 채용심사위원회 기타 이에 준하는 성격의 합의제 기구를 포함한다. <신설 2025. 7. 21.>

제3조(수당) ① 시장애인체육회 비상근 임원 및 외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25. 7. 21.>

1. 참석수당: 위원회 등에 참석하여 심의·의결·심사·자문 등을 할 때 지급하는 수당
2. 심사수당: 서면 심사 또는 위원회 등이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 등에 보고할 때 지급하는 수당 <개정 2025. 7. 21.>
3. 그 밖에 위원회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당 <신설 2025. 7. 21.>

②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은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의 기준을 따른다. <개정 2025. 7. 21.>

③ 제1항제2호의 심사수당과 같은 항 제3호의 수당은 시장애인체육회 규정 또는 사전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 <신설 2025. 7. 21.>

제4조(여비) 시장애인체육회 비상근 임원 및 외부위원이 시장애인체육회 사업과 관련하여 공무로 출장을 갈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25. 7. 21.>

부 칙(2024. 6. 3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5. 7. 21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수당지급표 <개정 2025. 7. 21.>

구분	단위	단가	비고
위원회 등	일당	기본료: 150,000원 초과: 50,000원	- 원격회의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-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- 당연직 위원(공무원)에 대하여 미지급

※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될 경우 개정안을 준용한다.